

## 기업인 대상 최신 반부패 정책 자료집(2022년 9월)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기업의 청렴·윤리 경영 문화 확산을 지원하기 위하여 최신 주요 반부패 정책 자료집을 홈페이지에 정기적으로 게시하고 있습니다. 기업인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 주요 내용 (총 4건)

- ① 국민권익위, “국민 일상·현장에서 불편 초래하는 규제 적극 손본다”(22.8.31)
- ② 국민권익위, “개발도상국에 부패·공익신고 시스템 ‘청렴포털’ 구축·운영 지원 추진”(22.9.22)
- ③ 국민권익위, “공공기관의 무분별한 상품권 제공, 부정사용 막는다”(22.9.20)
- ④ 국민권익위, 민선8기 지방정부와 청렴·공정 정책 추진방향 직접 소통(22.9.14)

※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부패방지 정책 → 부패방지 자료실 → 청렴정책)

■ 문의사항 :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총괄과(044-200-7619)

## 국민권익위, “국민 일상·현장에서 불편 초래하는 규제 적극 손본다”

반부패 법·정책 속 규제 합리화, 규제민원 고충처리, 부당규제 행정심판, 선제적 제도개선 등 역량 집중

(22. 8. 31. 국민권익위)

일반국민, 언론, 국회 등의 개선 요구를 토대로 반부패 법·제도 상의 모호하거나 불합리한 규정 및 해석기준을 발굴하고 사회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 합리적으로 개선·보완한다.

신고자의 혼란을 초래하는 반부패 신고 관련 5개 법률\*의 신고자 보호·보상 규정을 통합한다. 또 최대 30억 원의 보상금 지급 상한을 폐지하고 지급 비율을 통일한다.

\* 부패방지권익위법, 공익신고자 보호법, 청탁금지법, 공공재정환수법, 이해충돌방지법

‘달리는 국민신문고’, ‘기업고충 기동해결 특별컨설팅’을 통해 규제민원을 발굴해 최우선 처리하고, 빈발·반복되는 규제민원은 기획조사 과제로 선정해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새 정부의 중점과제인 '규제혁신'을 전방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반부패 법·정책 규제 합리화 및 제도개선, 적극행정, 민원조정, 행정심판 등 위원회의 모든 정책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앞서 국민권익위는 지난 5월 '규제혁신 전담팀(TF)'을 구성하고 국민의 삶과 직결된 생활 속 불편을 중심으로 불필요한 규제 발굴과 혁신을 추진해 왔다.

국민권익위는 반부패 법·정책 속 규제를 보완·정비한다. 우선 일반국민, 언론, 국회 등에서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청탁금지법' 기준·해석상 규제요인을 발굴·정비한다.

또 시행 초기인 '이해충돌방지법'상 규제 소지가 있는 기준·방식 등을 보완해 법의 규범력을 높이고 조기 정착을 유도한다.

지방 현장의 과도한 규제규정으로 지방경제 활성화를 저해하고, 불공정·부패를 유발하는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의 자치법규를 중점 개선한다.

이를 위해 국민권익위에 '지자체 자치법규 개선팀(TF)'을 구성해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금년 하반기부터 순차적으로 개선해 나간다.

반부패 신고 5개 법률에 각각 규정하고 있는 신고자 보호·보상 규정을 내년 말까지 '공익신고자 보호법' 중심으로 통합해 혼란을 예방하고 신고자가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도록 한다.

또 최근 내부제보자에 대한 보상 수준이 부족하다는 의견에 따라 최대 30억 원의 보상금 지급 상한액을 폐지하고 지급비율(4~30%)을 정률제(30%)로 통일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적극행정'에 대한 국민의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4대 중점 분야\*를 우선 추진한다. 또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현행 중앙행정기관과 지자체 외에 모든 공공기관까지 '적극행정 국민신청제' 적용범위를 확대해 나간다.

\* ▲청년세대에 불합리한 사항 ▲기업·중소기업·소상공인의 어려움 ▲코로나19 민생회복 ▲국민의 생활 속 불편사항

공직자의 소극행정을 야기하는 법령 미비·불명확, 인력·예산 등 자원부족 문제를 선제적으로 발굴·개선해 재발 방지에 주력한다.

'달리는 국민신문고', '기업고충 기동해결 특별컨설팅'을 통해 국민 일상에서 불편·부담을 발생시키는 규제민원을 발굴해 최우선 처리한다.

이어 빈발·반복되는 규제민원, 경제 활성화를 위한 규제혁신, 취약계층 애로, 소기업·소상공인 불편사항 등 과제를 발굴해 제도개선을 우선 추진한다.

행정심판 시 상위법령에 반해 하위법령에서 과도하게 국민을 규제하는 경우 위법하지 않더라도 부당하다면 행정청의 처분을 취소하고, 합리적 사유 없이 인·허가를 지연시키는 경우 즉각적인 의무 이행을 명령한다.

또 영업정지처분을 과징금 부과처분으로 변경하거나 자격취소를 자격정지로 감경하는 등 실질적인 권리구제를 활성화한다.

국민권익위 전현희 위원장은 “모든 부처가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규제혁신에 나서야 할 중요한 시점”이라며, “국민이 규제혁신의 변화를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도록 국민 접점에 있는 국민권익위가 이를 확실히 뒷받침 하겠다.”라고 말했다.

## “개발도상국에 부패·공익신고 시스템 ‘청렴포털’ 구축·운영 지원 추진”

유엔개발계획(UNDP)과 협력대상국 선정 위해  
21일 13개국 관계자 대상 온라인 협력회의 개최

(22. 9. 22. 국민권익위)

부패·공익신고 시스템 구축과 운영 경험 등을 개발도상국에 지원하기 위한 ‘청렴포털 공유사업’ 협력대상국 선정을 논의하는 자리가 열렸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와 유엔개발계획(UNDP)은 ‘청렴포털’ 공유사업 참가를 신청한 13개 개발도상국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협력대상국 선정을 위한 온라인 협력회의를 21일 개최했다.

‘청렴포털’은 국민 누구나 편리하게 부패행위, 공익침해행위 등을 신고할 수 있는 우리나라의 디지털 기반 부패·공익신고 시스템이다.

국민권익위와 유엔개발계획은 지난 6월 ‘디지털 기술 기반 반부패 시스템 공유사업’에 관심있는 30개 개발도상국 관계자 62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명회를 개최했다.

설명회 이후 우리나라의 '청렴포털' 운영 및 기술지원을 희망하는 13 개국이 사업 참가 지원서를 제출했다.

이번 협력회의에서는 최종 사업대상국 2곳을 선정하기 위해 지원국 관계자들을 심층 인터뷰한 후 각국의 특수성과 사업 적합성을 면밀히 검토했다.

국민권익위와 유엔개발계획은 26일 협력대상국을 최종 선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협력대상국은 향후 2년간 각국의 상황에 맞는 부패·공익신고 시스템 구축과 운영을 위한 지원을 받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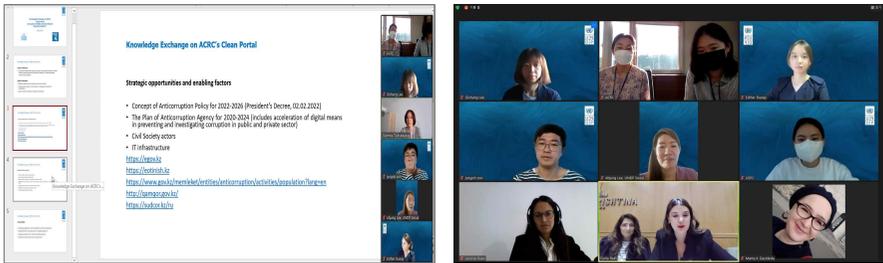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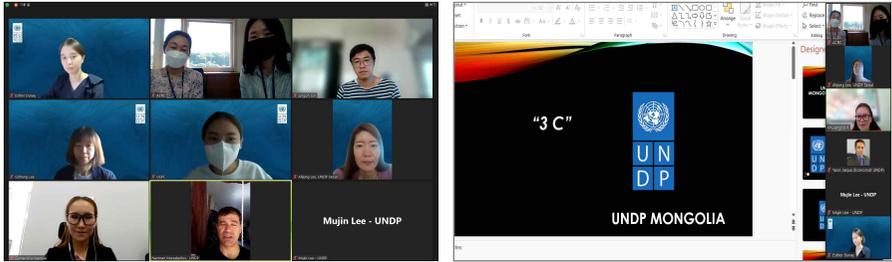
국민권익위는 협력대상국에 시스템 구축 및 운영 경험을 지원하고 유엔개발계획은 기관 간 의사소통과 전반적인 사업관리를 맡는다.

특히 대상국의 제도 및 시스템 비교분석, 사업담당자 집중연수 실시, 대상국 외 타 국가도 참고할 수 있는 '청렴포털 분석 영문 자료' 등을 통해 기술지원의 효과성을 높일 계획이다.

국민권익위 임윤주 기획조정실장은 "우리나라의 '청렴포털'에 대한 많은 국가들의 높은 관심과 기대를 확인하는 계기가 됐다."라며, "최종 협력대상국의 성공적인 디지털 반부패 시스템 구축·운영을 위해 필요한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우리나라의 청렴포털 구축 및 운영 경험이 대상국 외에 여러 국가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붙임** 온라인 협력회의 사진



**국민권익위, “공공기관의 무분별한  
상품권 제공, 부정사용 막는다”**

74개 공공기관 7,128개 사규 부패영향평가 실시,  
부패유발요인 915건 개선 권고

(22. 9. 20. 국민권익위)

앞으로 용도와 무관하게 상품권을 지급하거나 상품권을 활용해 공직자에게 영향력을 주는 등의 공공기관 예산 남용이 엄격히 제한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고용·복지, 교육·문화 분야 75개 기타 공공기관 사규에 대해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하고 915건의 개선안을 각 기관에 권고했다.

국민권익위의 부패영향평가 결과, 공공기관의 상품권 사용에 대한 내부 통제가 허술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직무 관련 공직자에게 상품권을 불법 제공하거나 소속 직원들에게 관련 없는 예산으로 상품권을 구입해 지급하는 일이 없도록 상품권 구매·관리 및 사용 근거를 마련하도록 했다.

또 예산과 용도를 구분해 상품권을 구매하고 명절 또는 사업 홍보를 빌

미로 유관기관, 언론관계자 등에게 상품권을 지급하지 못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상품권 부정사용을 방지하기 위해 지급대상 관리를 의무화하고 사용내역을 정기적으로 공개하도록 했다. 이어 실태점검을 통해 부정사용에 대해서는 징계와 환수하도록 했다.

채용방식을 명확히 구분하지 않아 제한경쟁채용을 특별채용으로 하는 등 채용비위가 발생할 우려가 있었다.

특별채용은 법률상 고용의무에 따라 국가유공자, 장애인 등 특정인을 채용하기 위한 제도이므로 자격증, 전문경력 등 특정 자격요건을 갖춘 자는 특별채용이 아닌 제한경쟁 방식으로 채용하도록 했다.

또 ‘기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나 ‘기관 운용상 불가피한 경우’ 등 임의 채용이 가능한 규정을 모두 삭제하고 비위면직자의 취업 제한이 누락되지 않도록 했다.

징계처분을 받은 임직원에 대해 엄정한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중징계 또는 금품수수, 공금 횡령, 채용비위, 성범죄, 음주운전 등으로 징계를 받은 자에게는 최하위 성과등급을 부여하도록 했다.

특히 금품 수수, 공금 횡령에 대해서는 징계 외에도 유용액의 5배 이내

의 징계부가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외에도 ▲우월적 지위에서 용역, 공사, 물품 등에 대한 대가지급의 부당 지연 방지를 위해 지급기한을 최대 5일로 제한 ▲퇴직자 및 퇴직자가 대표이사, 이사, 감사 등으로 있는 법인과 2년간 수의계약 금지 ▲인사·징계, 용역 수행기관 선정 등 주요 위원회 구성 시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에 대한 제척·기피·회피 등 공공기관의 각종 부패유발요인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국민권익위 한삼석 부패방지국장은 “공공기관은 국민 생활에 밀접한 영향을 주는 만큼 사규에 내재한 부패유발 규정들이 관행적·반복적 부패를 발생시키거나 국민 불편 규제로 작용하지 않도록 적극 개선해 나가겠다.” 라고 말했다.

## 붙임1 고용·복지 교육·문화 분야 기타공공기관 사규 주요 개선권고 사항

- (점검대상) 국가생명윤리정책원, 서울대학교병원 등 74개 기타공공기관에서 운영 중인 7,128개 사규(정관, 규정, 규칙, 지침 등)
- (점검결과) 인사권 남용방지, 기관운영의 청렴성 강화, 계약업무의 투명성 제고의 3개 유형 및 15개 과제에 대해 915건 개선권고

유형	개선권고 과제
인사권 남용방지	1. 징계 처분을 받은 자에 대한 엄정한 제재
	2. 징계의 감경 및 감경금지의 엄격한 적용
	3. 비위행위 등과 관련된 직원의 의원면직 제한
	4. 비위행위 등과 관련된 직원의 포상 제한
	5. 음주운전에 대한 징계양정기준 강화
	6. 공정하고 투명한 채용 실시
	7. 위원회 구성·운영 시 이해충돌방지
기관 운영의 청렴성 강화	8. 상품권 구매·관리의 투명성 강화
	9. 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
	10. 법인카드 사용의 내부통제 강화
	11. 외유성 국외출장 방지를 위한 검증체계 구축
	12. 연구윤리 조사 및 연구자·연구과제 심의 시 이해충돌방지
계약업무의 투명성 제고	13. 계약 및 집행의 청렴·투명성 강화
	14. 입찰 시 사전규격 공개 철저
	15. 공정한 수의계약 체결

## 붙임2 부패영향평가 제도

- 개요
  - 법령·제도의 입안단계에서부터 부패위험요인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사전에 제거·개선하는 예방적 성격의 부패통제장치
  - \* (추진근거)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8조, 동법 시행령 제30조~32조

- 평가 대상
  - 법령, 행정규칙, 자치법규, 공공기관 등의 내부규정\*(사규)
  - \* '19.10월 부패방지권익위법 개정으로 공공기관 내부규정에 대한 직권 평가 가능

- 평가 기준
  - 준수, 집행, 행정절차, 부패통제의 4개 분야, 12개 기준으로 평가

평가분야		평가기준
준수	행정의 수요자 입장에서 부패유발요인 작용 가능성 평가	① 준수부담의 합리성
		② 제재규정의 적정성
		③ 특해발생 가능성
집행	행정의 공급자 입장에서 부패유발요인 내포 가능성 평가	④ 재량규정의 구체성·객관성
		⑤ 위탁·대행의 투명성·책임성
		⑥ 재정누수 가능성
행정절차	수요자, 공급자 입장이 아닌 행정절차적 요인으로 인한 부패발생 개연성 평가	⑦ 접근성의 용이성
		⑧ 공개성
		⑨ 예측 가능성
부패통제	행정절차 전반에 사적 이해관계 개입 위험성, 소극행정, 부패통제장치 마련 여부 등 평가	⑩ 이해충돌 가능성
		⑪ 부패방지장치의 체계성
		⑫ 소극행정 가능성

- 평가 내용
  - (제·개정 법령) 행정기관의 법령 제·개정 시 법령안의 부패유발요인을 법제처 심사 前 단계에 평가해 소관부처에 개선 권고
  - (현행 법령 등) 부패사건 등 사회적 이슈 사안을 현안과제로 선정해 법령, 제도 등에 대한 부패유발요인 평가 및 개선 권고

## 국민권익위, 민선8기 지방정부와 청렴·공정 정책 추진방향 직접 소통

14일 및 16일 지방자치단체 감사관 회의 개최

(22. 9. 14. 국민권익위)

청렴선진국으로의 도약을 위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청렴·공정 정책 소통의 장이 마련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민선 8기 지방정부 출범 초기에 지방정부와 직접 소통하며 청렴·공정 정책 추진 방향을 논의하고, 현장의 의견을 듣기 위해 9월 14일과 16일에 '지방자치단체 감사관 회의'를 개최한다.

이번 회의는 14일에 17개 광역자치단체, 16일에 226개 기초자치단체 감사관 등이 참여한다.

회의는 올해 하반기 반부패 법령·제도 중점 추진 방향 등을 공유하고, 현장의 애로사항과 제도운영 관련 건의사항 등 지방현장의 의견을 듣는 소통의 장으로 운영된다.

반부패 법령·제도 중점 추진방향에 대해서는 크게 ▲이해충돌방지법과 청탁금지법 등 공직자의 반부패 행위규범과 공공재정 운영 실태 등에 대한 하반기 점검사항 ▲부패영향평가를 통한 지방자치단체 자치법규 집중점검과 법정 청렴교육 이수 관리 강화 내용 ▲부패·공익신고 관리와 신고자 비밀 보호, 비위면직자 취업제한 제도 관련 변화된 내용 등을 공유한다.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의 특성을 고려해 청렴도 향상을 위한 제도에 대해 설명하는 시간도 가진다.

우선, 규모와 영향력이 큰 광역자치단체의 청렴도 향상을 지원하기 위해 광역자치단체 회의(14일)에서 청렴컨설팅\* 제도의 개요와 그동안의 성과를 소개하고, 향후 발전적 제도 운영 방향을 논의한다.

\* 청렴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기관을 대상으로 기관 현황을 진단하고, 전문가, 국민권익위, 멘토기관(청렴도 우수기관)이 종합적인 맞춤형 대안을 제시

기초자치단체 대상 회의(16일)에서는 올해부터 개편된 종합청렴도 평가에 대한 설명과 유의사항을 전달한다.

올해부터 기존 이해관계자 대상 설문조사 중심의 '청렴도 측정'과 기관별 반부패 노력을 평가하는 '부패방지 시책평가'를 통합해 '종합청렴도'를 평가하는데, 대부분의 기초자치단체들은 기존에 부패방지 시책평가를 받지 않아 사실상 첫 종합평가를 받게 되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지방 현장의 의견을 직접 듣고 정책 추진 반영 여부 등을 검토한다. 회의 개최 전 공유한 자료를 바탕으로 지방정부의 의견을 수렴하고, 회의 당일에 나온 의견 중 정책에 반영할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의 검토를 거치는 등 환류할 예정이다.

국민권익위 안성욱 사무처장은 “그간 우리나라 국가청렴도 향상에 국민들과 직접 교류하고 소통하는 자치단체 공직자들의 헌신이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라고 말했다.

이어 “국가청렴도 향상과 청렴선진국으로의 한 단계 도약을 위해 앞으로도 국민권익위와 민선 8기 지방정부가 함께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